

『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』 업무지원기관 모집공고

중소벤처기업부 ‘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’ 사업의 업무지원기관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6일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

본 모집공고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TRL점프업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한 것으로 '26년 예산 확정 시 최종 업무지원기관 확정('25.12월 예정)

1. 모집개요

- (목적) 기술 및 시장 검증 등 공공기술의 민간이전부터 사업화 성공까지 단계별 밀착지원을 위한 업무지원기관 모집·선정

< 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 R&D 개요 >

- (사업목적)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-수요간 기술 성숙도 간극 최소화
- (지원내용) 대학, 연구기관의 공공 이전기술에 대한 PoC·PoM을 통해 개발과제의 기술·사업성 검증 후 기술개발 지원
 - (기술이전사업화) 대학·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
 - (TRL점프업)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분야 등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(TRL)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·학·연 공동 연구개발 지원
- (지원대상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(기술이전·TRL점프업) 공공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R&D 추진 중소기업
- (지원기간 및 조건) ①1단계 PoC, PoM, 예비연구 후 우수과제에 대해 ②2단계 사업화R&D진행

내역사업	세부과제	개발기간 및 지원금액	정부지원금비율	공모방식
기술이전사업화	(1단계) PoC, PoM	최대 9개월, 1억원 이내	75% 이내	자유공모
	(2단계) 사업화R&D	최대 24개월, 10억원 이내		
TRL점프업	(1단계) PoC, PoM	최대 9개월, 1억원 이내	75% 이내	지정공모, 품목지정
	(2단계) 점프업R&D	최대 24개월, 10억원 이내		

- **(내 용)** 기술개발의 전주기 관점에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전략 종합지원(1단계 PoC, PoM, 2단계 실증, 투자유치 지원 등)
 - 사업홍보 및 정책수요자 발굴, 특화지원프로그램 제공, 과제별 밀착지원(중간점검, 분석보고서 제공) 등
 - TRL점프업은 지정공모 형식으로 지원과제(RFP) 발굴 업무 포함
 -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
- **(모집 기관 수)** 기술 및 시장검증, 실증 지원이 가능한 5개* 기관 내외
 - * 기술이전사업화 3개 내외, TRL점프업 2개 내외
 - 내역사업별 각 모집기관의 선정(발표)평가로 진행되며, 동시 신청 가능 단, 내역사업별 구분없이 1개만 선정됨
- **(지원규모 및 예산)**

내역사업	지원과제당 업무지원기관 운영비	지원과제 수	모집기관 수
기술이전사업화	(사전~1단계) 1,500만원 (2단계~3단계) 1,600만원	추후 안내	3개 내외
TRL점프업	(사전~1단계) 2,000만원 (2단계~3단계) 1,800만원	추후 안내	2개 내외

* 모집기관 및 지원과제 수는 '26년 확정 예산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** '26년도는 1단계만 지원, '27년부터 1단계, 2단계 지원

- 전문기관에서 선정된 업무지원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운영비는 없으며, 개발과제 선정 후 기업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여 지급
- **(협약기간)** '26년 ~ '28년
 - * 연차별 추진 후 평가를 통해 협약의 계속(지원과제수 차등배정) 또는 해약할 수 있으며, 정부 정책에 따라 협약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

2. 신청자격

- (신청자격) PoC, PoM, IP R&D, 투자연계, 실증 등 지원의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으로, 아래 세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

<p>① 신청기관 기본 자격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부처 소관 비영리 법인이면서, 주관 또는 참여기관의 역할로 최근 3년 이내('22~'25) 정부지원사업 또는 연구개발·관리업무를 수행한 경험 보유
<p>② 신청기관 세부 자격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 ·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·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,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원 ·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·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·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테크노파크 ·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27조에 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
<p>③ 신청기관 인력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계별 과제 밀착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갖추고, 지원 과제별 맞춤형 기술코디네이터 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*를 통해 매칭 가능한 기관 · 전담인력 상근자 3명 이상으로(책임자 1명, 실무자 2명) 책임자는 정부지원사업 또는 연구개발·관리업무 수행이력 3년 이상 경험 보유

* 협업네트워크는 타 기관과 MOU 체결 등으로 인적·물적 자원을 공유, 활용할 수 있는 체계

- (신청기관 형태)

내역사업	신청기관	신청형태	협업기관
기술이전사업화, TRL점프업	비영리기관	단독	-
		컨소시엄	영리/비영리 기관

- (신청제한)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아래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

제한조건	세부내용
휴·폐업	·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세금체납	·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채무불이행	·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
금융규제	·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·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
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	· 체불사업주 명단(고용노동부)에 공개된 경우 ·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(고용노동부)으로 공표된 경우
참여제한	· 정부사업 관련하여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·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에서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·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에 의해 -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인 경우 -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)

3. 업무지원기관 주요업무(안)

< 사업 단계별 업무지원기관 주요 역할 >

		사전단계	1단계 (과제기획 및 사전검증)	2단계 (R&D)	3단계 (사업화 및 성과관리)
업무지원기관 역할	기술이전	사업홍보	과제별 기술코디네이터 지정		기술사업화패키지, 사업화프로그램 연계 등 사업화 지원 및 성과 관리
	TRL 점프업		사업홍보	RFP발굴	
		과제별 기술코디네이터 지정		과제관리	
			PoC-PoM	실증(테스트베드)	
		IP R&D	투자유치 지원		
		기술이전계약 검토 (공증 등)			
		PoC-PoM	과제관리		
		IP R&D	기술 컨설팅		
		기술이전계약 검토 (공증 등)	실증(테스트베드)		
				투자유치 지원	

① (사전단계) (공통) 사업홍보, (TRL점프업) 공공 이전기술 과제 발굴

- 사업, 과제발굴 설명회 등 개최 및 홍보
- (TRL점프업) 과제 수요 발굴 및 RFP* 기획 등
- *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內 기술제안요구서 작성(R&D과제 연구비 적정성, 현 TRL수준 및 기술개발 완료 후 TRL수준 분석, 기술개발 목표 등 포함)

② (1단계) (공통) 과제 사전검증(PoC, PoM) 지원

- (지원팀 구성) 과제별 기술코디네이터 및 전문가팀 지정 필수
 - * 기술코디네이터 역할 : 과제별 기술컨설팅, 이전기관-중소기업 간 조정역할 수행 등
 - ** 전문가팀 역할 및 구성 : 과제별 맞춤형 기술 자문, 법률 행정 자문 등 제공(산학연 기술 전문가, 변리사, 회계사, 시장전문가, 변호사 등으로 구성)
- (기획보고서 작성)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·보완하여 PoC, PoM 실시, 과제 종료 이내에 기획보고서 제출
 - (PoC) 기술 분석, 지적재산 전략분석(IP R&D), R&D 지원을 통한 기술 개념 구체화 및 개발 방법, 목표치 고도화
 - (PoM) 기업현황, 국내·외 시장분석, 경제성 분석, 사업화 전략 등
- (기술이전계약 검토) 과제별 기술이전계약 법무 공증, 타당성 검토 등

< 기획보고서 내용(예시) >

구 분		주요내용
PoC	기술분석	• 개발기술개요, 기술현황 및 전망, 기술수명주기 분석, 핵심기술 분석, 기술의 위치 분석, 기술 분석 의견 종합
	지적재산 전략분석	•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, 지적재산 확보 전략,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,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
	R&D	• 세부 기술개발 전략(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, 일정별 결과물), 인력운용, 개발 자금계획,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등
PoM	기업현황 분석	•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,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, 경영현황 분석, 재무현황 분석, 기업 역량분석 종합
	시장분석	• 산업동향, 시장현황 및 전망, 시장특성, 목표시장선정, 시장 분석 의견 종합
	해외시장 분석	• 수출국 결정,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, 산업동향, 시장현황 및 전망, 시장특성
	경제성 분석	• 예상매출액 분석, 예상원가 추정, 수익성지표산출,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	사업화	• 산업환경.기업환경(기술, 인력, 생산).시장환경 분석,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/계획 수립, 사업화 추진전략/계획 수립, 해외진출전략 수립 등

③ (2단계) **(공통)** 사업화 R&D지원

- (기술자문) 과제별 맞춤형 기술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자문
- (실증지원) 개발과정에서 실질적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가 패널,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실시
- (투자유치 지원) 기술개발과제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투자유치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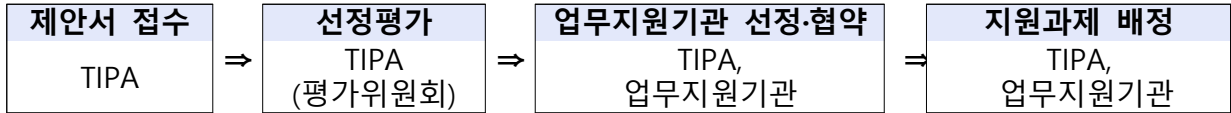
④ (3단계) **(공통)** 사업화 지원 및 성과관리

- (사업화 지원) 완료 과제 대상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
- (성과관리) 지원과제 성과관리 및 업무지원 성과 보고

* `27년부터 업무지원기관별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

4. 선정방법

- (선정절차) 관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종합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 선정



*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함

** 내역사업 별 모집 기관 수 대비 신청 기관 수가 부족한 경우 추가공고 진행 가능함

- (선정방법)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지원기관 선정

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
--

*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

**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
- (평가기준)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관보유 역량 (45)	기관 현황 및 역량	- 조직 구성현황 및 관리능력의 우수성 - 수행 인력의 전문성(경력, 자격 등)	15
		- 기술개발 및 시장분석을 위한 데이터 등 보유 인프라 현황 - 실증 지원을 위한 자체 테스트베드 등 구축 현황 또는 타 기관 인프라 활용 계획 적정성	10
	수행경험 및 협업능력	-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유사실적	10
		- 중소기업 지원 관련 네트워크의 우수성 - 기술분야 별 전문성 보유 기관, 시장분석 전문성 보유 기관과의 협업 계획 적정성	10
지원계획의 타당성 (55)	추진전략 및 내용	- 추진계획의 논리성 및 체계성 - 사업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	20
		- 기업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-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	20
		- 기술개발 과정에서 자문 역량 - 품질 보증 계획 및 보안 유지대책	15
합 계			100

※ (동점자 처리 기준)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 ① 추진전략 및 내용 점수 합 → ② 수행경험 및 협업능력 점수 합 → ③ 기관현황 및 역량 점수 합의 순으로 선정
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'25. 11. 6.(목) ~ 11. 27.(목), 18:00까지
 -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보완 및 교체 절대 불가
 - * 단, 전문기관이 신청자격 검토 등을 위한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
- (신청방법)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
 - 신청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에 따른 열람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"PDF 형식"으로 변환하여 제출

☞ 접수 이메일 주소 : **711@tipa.or.kr**
 ☞ 신청시 메일 제목 앞단에 **[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 업무지원기관 신청]** 기재 요망
 ☞ 접수완료시 담당자가 확인 메일을 회신드릴 예정이오니, 미회신 시 반드시 유선 연락 요망(044-300-0653, 0656)

- (제출서류)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[붙임2 양식 참조]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	
		필수	해당시
①	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 업무지원기관 신청서	○	
②	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 업무지원기관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* 30페이지 이내 작성,(별첨 제외)	○	
③	업무지원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서	○	
④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	○	
⑤	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		○
⑥	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(최근 1개월 이내)	○	
⑦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○	
⑧	사업추진 실적증명서(최근 '22~'25)	○	
⑨	업무지원기관 수행 서약서		○
⑩	개인(기관)정보 활용동의서	○	
⑪	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○	
⑫	청렴 서약서	○	

* 신청기관은 협업기관이 있는 경우 ③~⑫ 제출서류 중 필수에 해당하는 서류 추가제출

6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 및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전문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관 미확인(연락불능), 연락처 오기 및 착오 등으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업무지원기관으로 선정 시, 전담조직의 소속 인력은 '2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기술이전사업화·TRL점프업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 참여(수행)하는 것은 불가함
- 업무지원기관으로 선정 후 협약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수정·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7. 향후 일정

- 신청·접수 : '25. 11. 6. ~ 11. 27., 18:00까지
 - 선정(대면)평가 : '25. 12월 초
 -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: '25. 12월
- *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8. 문의처

기 관 명	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	044-300-0653, 0656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술상용화사업실)	